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FTA”

보도일시 12.13(수) 석간

생 산 일	2006.12.11	생산부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과 장	김경한 조사분석 팀장	담당자	송영관 전문관 (2100-4485)

제목: 한미FTA, 그 이후를 준비한다

부제: 한미FTA 영향분석 및 대응방향 수립을 위한 산업별·분야별 토론회

- 한미FTA 협상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체결지원회는 한미FTA 체결 이후 새롭게 전개될 여건 변화에 따른 정부정책방향과 우리 업계의 대응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한미FTA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써 향후 우리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 가느냐에 따라 그 성과의 극대화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 투자 분야에 이어 섬유(12월 14일), 수산업(12월 19일), 자동차(12월 21일)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으며, 내년 초에도 주요 산업별·분과별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 첫 번째로 준비된 투자 분과 토론회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및 KOTRA의 주관하에 12월 13일(수), IKP(Invest Korea Plaza) 3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투자현황(세션1)과 투자협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ISD)(세션2)을 중심으로 투자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첨부 : 상세 일정 및 발표 내용 1부 /끝/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첨부 1 : 상세일정]

2006년 12월 13일, 수요일

9:00~ 9:30 등 록

9:30~10:00 개회사: 홍영표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단장)
기조연설: 한미FTA와 외국인투자
: 안충영 (KOTRA ombudsman)

10:00~12:30 Session 1: 한국의 투자환경

- 사회: 안충영 (KOTRA ombudsman)
- 주제발표: (1)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현황
: 임경묵 (KDI 박사)
- (2) 외국투자기업 사후관리 및 고충처리 현황
: 이상광 (KOTRA 외국기업고충처리팀장)
- (3) 외국인 투자환경의 국제비교 및 개선 방안
: 이성봉 (KIEP 박사)
- 정책제언 및 토론: (1) Tami Overby (AmCham 회장)
- (2) 오문석 (LG경제연구소 상무)
- (3) 곽수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4) 곽정수 (한겨레 전문기자)

12:30~14:00 오찬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14:00~16:30 Session2: 한·미FTA와 투자

- 사회: 성극제 (경희대 교수)
- 주제발표: (1) 한미FTA와 투자협정
: 김관호 (동국대 교수)
- (2) ISD 투자분쟁 해결절차
: 이재민 (한양대 교수)
- (3) 한미FTA와 투자보호
: 정규상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변호사)
- 정책제언 및 토론: (1) 최태관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 (2)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3) 홍은주 (MBC 논설위원)

[첨부 2 : 발표내용요약]

Session 1

□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현황

- 임경묵 (KDI 박사)

-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는 2001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침체를 시현
 - 2005년 말을 기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 투자 부진의 원인은 다음의 요인들에서 찾을 수 있음.
 - ① 대기업의 재무구조조정: 외환위기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② 중소기업의 투자부진:
 - ㄱ. 구조조정 미흡: 부실기업이 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급증
 - ㄴ. 해외직접투자 증가: 중국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이전
 - ③ 비제조업의 구조적 투자 부진: 비제조업의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OECD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비제조업의 투자성향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
 - 과거 비제조업의 투자를 주도하던 전기·가스·수도 및 통신 산업을 대체할 업종이 출현하지 못하고 있음.
- 대기업의 재무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제조 대기업의 투자성향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여타 이슈들은 남아있으며, FTA 등 개방확대는 비제조업의 투자 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방확대가 사업서비스, 교육, 레저 및 의료 등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투자 촉진에 기여하도록 준비할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및 고충처리 현황

- 이상광 (KOTRA 외국기업고충처리팀장)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지원 등 사후관리제도는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음. 첫째, 전체 FDI에서 기존투자자의 증액투자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투자자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틀이 될 수 있음. 둘째, 기존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성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규투자자를 유입하는 구전효과 또는 reference로서 활용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의견을 피드백 함으로써 투자환경, 정책, 제도의 국제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현재 각 부처별, 지자체와 투자유치기관인 kotra (Invest KOREA, 외국인투자음부즈맨) 등에 분산되어 있음. 이러한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능은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들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국가투자유치기관인 kotra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향은 2006년 11월에 개관한 IKP를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상공회의소 등과의 다양하고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애로사항들을 발굴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을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애로사항 중에는 생활 및 경영환경 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도 하고 각 외투기업을 담당하는 홈닥터의 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도 함. 현재 정부가 선정한 생활환경 및 경영환경 개선 과제는 151개 과제가 있으며 지난 3분기말 기준으로 79건이 완료되어 52%의 완료율을 보임. 고충처리는 연간 350건 전후로 처리되고 있으며 연간 20건 정도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고충이고, 행정처리와 관련된 고충은 70건 정도임.
- 외국인투자자 사후 관리 기능의 산재 및 통합시스템 미비, 분석 및 피드백 제도의 미흡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정부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핵심 전략산업과 산업클러스터화, 외국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철수사례 분석 등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투자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행정 절차상 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장치의 보완, 언어 및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한 노력, 각종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 감독기관 행정절차의 통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시장이나 경영실적 요인이지만 투자환경 즉, 언어적요인, 생활여건, 국가이미지적인 요인 등도 중요함. 이러한 요인을 기반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홍콩 등을 들 수 있음. 시장요인에 못지않게 투자환경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국민정서 등도 관리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외국인 투자환경의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 이성봉 (KIEP 박사)

-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외국인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물론 정부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여러 여건 속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여건을 타하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저하기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너무도 급변하고 있음.

- 본 글에서는 한국의 외국인투자환경을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대상지로서의 한국의 환경을 아시아 10개 국가와 비교하여 투자환경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가장 부족한 환경요인은 높은 인건비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민의 전반적인 영어사용능력과 국제적 감각 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영어공용화의 단계적 추진 및 공교육 제도 개선 및 국제 인력의 유치를 위한 각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그리고 행정선진화, 조세부담의 완화 및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 등도 필요함.

Session 2

□ 한미FTA와 투자협정

- 김관호 (동국대 교수)

- 한미FTA 투자협정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여타국과 이미 체결한 양자간투자협정이나 FTA상의 투자협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새로운 내용이 아님. 따라서 투자협정을 통해 여타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대우나 기준을 미국의 투자자에게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음. 여타국의 투자자에 비해 미국의 투자자를 불리하게 차별할 이유가 없다면 투자부문 협상에서 크게 쟁점이 될 이슈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투자협정이 외국인투자유치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자유화의 확대, 그리고 투자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내투자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한미 FTA로 투자입지의 매력도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투자협정의 취지에 맞게 한국경제의 투자친화도를 격상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는 배가될 것임. 우리는 한미 FTA를 외국인투자 제 2의 도약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투자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인베스트 코리아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제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옴부즈맨 제도는 투자분쟁의 자기검열과 우호적 해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는 우리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외압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산권 보호의 수준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한미 FTA를 계기로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내 법제화 문제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부는 규제조치의 도입에 앞서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보다 정교화되고 발전된 규제조치를 추구해야 할 것임.

□ ISD 투자분쟁 해결절차

- 이재민 (한양대 교수)

- 투자자 대 국가간 투자분쟁해결절차 (ISD)는 최근의 BIT 및 FTA에서 포함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분쟁해결절차임.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국제법상 분쟁에 있어 기존의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인 (외국인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한 것이 본 제도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형태의 제도로서 다양한 장점과 문제점을 아울러 생각하여 볼 수 있음. 이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동 제도의 도입을 거부하여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문제점이 - 가령 불확실성, 남용 가능성 등 - 지나치게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분명 문제일 것이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국제적 추세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도 결국 이러한 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결국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 자체라기 보다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특정 협정문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이 실제 운용과정에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불확실성과 남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측,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한미FTA와 투자보호

- 정규상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뉴욕주 변호사)

- NAFTA의 ISD 분쟁에서 수용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잠정적으로나마 간접 수용(expropriation)의 판단기준 및 그 적용 원리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추출해 보았음.
-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즉, 어떤 조치이든 일단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크다면 간접수용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임(반면, 재산권 침해 정도가 미미하다면 간접수용에 해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여기에 판단의 또 다른 기준으로서 정부 조치의 성격이 공공 목적을 위한 것이고 선의에 의한 비차별적인 행위였다면 간접수용에 해당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고, 투자자의 합법적 기대가 성립된 상태(정부가 명시적으로 투자자에게 약속을 하여 투자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에서 정부가 이를 배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간접수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유의하여야 함.
- 이른바 비보상 규제의 영역(조세, 환경, 건강보호, 안정 등)에 해당되는 비차별적인 조치이면서, 정부 당국에 의한 사전 약속(commitment)이나 진술(representation)이 없었기에 투자자의 합법적 기대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수용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용과 관련하여 NAFTA의 분쟁 사례가 보여주는 법리의 핵심인 것으로 평가됨.
- NAFTA와 한미FTA의 수용관련 조항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 NAFTA는 위와 같은 수용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미국의 모델 BIT를 기준으로 하는 한미FTA 초안은 이를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기타 보완장치(중재비용의 패소자 전액 부담 원칙등)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NAFTA에 비해서는 정부에 대한 투자자의 중재 제소가 남용될 가능성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